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아동수당 국외체류 지급 정지에 납세자 제외〉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65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기현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6. 01. 12.
3. 회 부 일 : 2026. 0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국외에 거주하면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임.

그러나 우리나라 국적의 아동이 해외에 체류한다는 사유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특히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호자가 국내에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국외 체류기간에 관계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경우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더라도 아동수당 지급 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u>지속되는 경우</u> . 이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 ----- ----- ----- ----- ----- ----- ----- ----- ----- 1. ----- ----- <u>지속되는 경우</u> (다만, 아동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보호자가 「소득세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현행	개정안
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2.·3. (생략) ②·③ (생략)	----- ----- -----. 2.·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에 따르면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수급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날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고 있음(법 제13조제1항).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대통령령)>

법률	대통령령
1.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2. 수급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수급아동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수급아동이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다만, 수급아동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최근 4년간 아동수당 지급 정지 건수는 연간 약 2만건 수준으로, 2025년에는 19,709건의 아동수당 지급 정지가 이루어졌음.

< 최근 4년간 아동수당 지급정지 건수 >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건수	15,225	22,951	21,176	19,709

자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주: 건수는 매월 지급정지 건수의 연합계

- 「아동수당법」 이외에도 「영유아보육법」, 「기초연금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는 수급자의 장기 해외 체류시 지급이 정지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기간은 대략 60일에서 90일 정도로 규정되고 있음.

<장기 해외 체류자에 대한 지급정지 규정>

구 분	법적 근거	해외체류 지급정지기준
양육수당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90일 이상 지속하여 국외 체류 중인 경우 지급 정지
기초연금	「기초연금법」제16조	수급자의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
장애인 연금	「장애인연금법」제15조	수급자의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
국민기초 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제2조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급여 중지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납세와 복지 혜택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 이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이행을 이유로 거주 요건을 배제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 제도인 아동수당의 성격을 기여 기반의 사회보험적 성격으로 변질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도 있고, 납세와 복지혜택이 반드시 연동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아동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반면, 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통상 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산정 시점이 실무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해외체류 시 예외 없이 지급을 정지하는 유사 제도와의 관계, 해당 국가의 복지제도 수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 신설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0